

변경 대비표

펀드명: JP모간 단기 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채권)

시행일: 2013년 12월 19일

- 투자설명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5.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간이투자설명서</u> 또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5. 이 집합투자기구 <u>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u>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	<p>가. 운용전문인력 다른 운용자산 규모 (2012.12.31 기준)</p>	<p>가. 운용전문인력 다른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2013.09.30 기준)</p>
제 2 부.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신설>	JP 모간 단기 하이일드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 추가
제 2 부. 9. 나. 수익구조	<신설>	JP 모간 단기 하이일드 연금 증권자투자신탁(채권) 추가
제 2 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p>가. 일반위험 ⑦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신설></p> <p>나. 특수위험 ⑥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하의 미국 세금 원천징수 모투자신탁은 미국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이 미국 재무부와 정보보고요구 및 원천징수요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2013년 12월 31일 이후 모투자신탁이</p>	<p>가. 일반위험 ⑦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u>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u></p> <p>나. 특수위험 ⑥ 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제도 (FATCA)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 에 의하면, 이 투자신탁이 FATCA 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p>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p>미국에서 얻은 소득 및 모투자신탁에게 이자?배당금을 가져다 주는 자산의 매각 수익 각각의 30%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다만, 미국세청 또는 재무부는 아직 협정 양식(Form)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세청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위 규정의 운영은 현저히 확대될 수도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규정 및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규정 및 정보 보고·공개에 대하여는 아직 명확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추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미국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2017년 1월 1일부터는 비미국(non-US) 당사자로부터 지급되는 금액 중 특정 금액도 포함하기 위하여 FATCA에 따른 이른바 “해외도관 지급금(foreign passthru payments)” 제도가 확대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되지 아니하였습니다. FATCA는 미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 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특정 미국인이 1인 이상 존재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른 지분 및 특정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부과될 수 있는 원천징수 의무와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해외도관 지급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2017년 또는 그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나 외국금융기관 협약의 형태는 아직 미국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또한 FATCA 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간협정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 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FATCA가 이 투자신탁에 대한 자신의 투자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판매회사 및 미국세청에게 제공·공개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 적용과 보고·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추후에 변동될</p>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p>수 있습니다.</p> <p>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모든 미국 연방세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 투자신탁 및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의 홍보 및 마케팅과 관련되어 기재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제 2 부. 11. 가. 매입	<p>(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C-W 클래스: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의 서면 승인이 없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다음의 자를 의미합니다.</p> <p>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 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 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 을, 전년 연도 체류일수는 1/6 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p> <p>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p>	<p>(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C-W 클래스: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p> <p>(6)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 호 및 6 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p> <p>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이민귀화국(U.S.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 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 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 을, 전년 연도 체류일수는 1/6 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p> <p>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p>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p>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p> <p>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p> <p>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신탁신탁을 의미합니다.</p> <p><신설></p>	<p>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p> <p>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p> <p>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신탁신탁을 의미합니다.</p> <p>5. <u>특정 미국인(Specified US Person(s))인 실질적 미국인 소유자(substantial US owner(s))가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하 S Internal Revenue 내지 1474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FATCA 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미국인 소유자’란 직·간접적으로 소극적 비금융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하는 미국인(위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단, 다음 유형의 법인들(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에 대하여는 몇 가지의 예외가 있습니다: i)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ii) IRC Section 501(a)에 따른 미국 세금이 면제되는 기관, iii) IRC Section 581 에 따른 미국 은행 및 iv) IRC Section 851 에 따라 규제되는 투자회사.</u></p> <p>6. <u>미국인(위 제 1 호 내지 제 4 호에 기재된 자를 의미하나, 제 5 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는 미국인은 제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FATCA 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말합니다)가 1인 이상 존재하는 비미국 법인(Non-U.S. Entity)을 의미합니다.</u></p>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신설>	다.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보수 및 비용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 JP 모간 단기 하이일드 연금 증권투자자산탁(채권) 보수 및 비용 추가
제 5 부.1.가.(2)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p>② 의결권 행사방법 <이하 생략></p> <p>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추가></p> <p>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p>	<p>② 의결권 행사방법 <이하 생략></p> <p>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6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 221 조 제 7 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p>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 190 조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p>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p>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p>	<p>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p>
<p>제 5 부.1.가.(4)반대매수 청구권</p>	<p>법 제 188 조 제 2 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이하 “매수청구기간”)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p><이하 생략></p>	<p>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p><이하 생략></p>
<p>제 5 부.3.나.(3)집합투자 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 91 조 제 1 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87 조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p><이하 생략></p>	<p>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 91 조 제 1 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 8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 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p><이하 생략></p>
<p>제 5 부.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p>	<p><신설></p>	<p>라. 이해상충</p> <p>JPMorgan Chase & Co. 또는 그 그룹회사(이하 “JPMorgan Chase & Co. 그룹”)가 직간접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또는 의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수익증권의 상대적으로 큰 부분을 보유할 수 있고 따라서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의 의결권의 큰 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JPMorgan Chase & Co. 그룹은 다양한 목적(집합투자기구 또는 수</p>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p>익증권 클래스의 성장,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 증권 클래스의 포트폴리오 운용 또는 세금 관련 보고 또는 특정 직원에 대한 장래 보수지급 의무 이행의 목적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상당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p> <p>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신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유지할 어떠한 의무도 없으며, 집합투자기구 또는 수익증권 클래스에 행한 자신의 투자를 언제든지 감축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p> <p>JPMorgan Chase & Co. 그룹은 자신의 재무계획의 일환으로, 자신이 투자한 수익증권 클래스에 대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소하기 위하여 그러한 위험을 헷지할 수 있습니다.</p>

- 간이투자설명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5. 이 집합투자기구는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p>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u>간이투자설명서</u> 또는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5. 이 집합투자기구 <u>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두자산</u>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p>
I.5.가.운용전문인력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현황 (2013년 9월 30일 기준 업데이트)
II.1.가.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추가>	<p>주)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p>